

1년에 2400명, 죽음의 행렬 멈춰야

⌘ 백승호 기자 | Ⓞ 승인 2021.01.08 15:11

세종충남 노동자 누더기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한다!

민주노총세종충남노동자들은 7일(목) "1년에 2400명,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충남 노동자 누더기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는 국회와 정부를 규탄! 기자회견 (사진 기자회견단)

세종충남노동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소위는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대로 통과된다면 생명을 살릴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에서 잠정합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는 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차별법을 제정 한 것 ▲공무원 처벌조항 배제는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이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 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나는 것인데도 공무원처벌조항을 배제 한것은 공무원의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

에서 벗어나게 한 것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위한 처벌법인데 합의된 법안은 사업주 보호법이 되었다며 규탄했다. 또한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인데 이를 막기위해서는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었고 발주처의 책임도 묻지 않고 일터괴롭힘도 분명하게 명시되지않았다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해 9월22일 국민동의청원운동으로 10만명을 달성하고 발의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국민의 요구는 묵살했다. 이에 김주환, 이태의 비정규직노동자가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이어 김용균 2주기추모기간이던 12월 11일에 이상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의 이상진 집행위원장과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인 김미숙, 이용관님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국회의원이 국회 본관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 했으며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 시민이 동조 단식에 참여했다.

이러한 요구에도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을 하지않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 불법인허가 등으로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아예 삭제, 인과관계추정도 삭제, 발주처의 책임도 묻지 않고 일터괴롭힘도 분명하게 명시되지않은채 누더기가 된 반쪽짜리 법안이 되어 오늘(1.8 금) 법제정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법사위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다.



백승호 기자 nanda6636@hanmail.net